

1971年度

食品衛生行政의 方向



申 光 淳

保健社会部食品衛生擔當官

食品衛生行政 發展의 해

政府는 1971年度를 “食品衛生行政 發展의 해”로 定하고 보다 科学化한 手段과 보다 組織化된 監視網, 그리고 보다 신속한 機動力으로서 国内에서 製造加工되는 모든 食品이 가장 安全하게 유통되어 消費者에게 공급되는 방향으로 모든 「첸벨」을 통한 업무에 一路邁進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基本方向을 指標로 삼아 食品衛生管理의 철저를 기하고서 “71年度食品衛生事業指針”을 保健社会部 食品衛生當局에서 마련하여 예하 各級 衛生行政機構는 이를 準則으로 삼아 식품위생관리와 이의 指導監督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와같은 食品衛生事業指導指針을 상세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 시책의 방향을 크게 들 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不良食品의 出廻要因을 제거하기 위하여 無 許可 및 有害食品의 근절과 許可業所中 法定施

設의 不備業所에 대한 강력한 警비를 단행코저 하고 있으며

둘째, 食品의 品質向上을 위하여 食品製造加工業 所에 대한 自家試驗室의 設置및 自体品質管理를 위한 要員의 配置와 法定標示基準의 履行과 더 불어 収去檢査의 科学化등으로서 그 品質이 保障된 食品의 流通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二大指標의 目的을 달성하게하 기 위하여 좀더 구체적인 細部實施要領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위한 강력한 事業을 현재진 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 無許可 및 有害食品의 根絶策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大單位集團의 食品市場을 衛 生的으로 指導管理하기 위하여 管轄衛生官署의 食 品衛生監視員을 常駐配置하여 食品의 流通系路의 把握과 不正食品에 관한 情報入手와 더불어 有機

의인 連絡으로 機動的인 團束에 臨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既存 告發 「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은 물론 市以上의 地域에서는 食品團束機動班을 편성하여 常駐시킴과 동시에 이들에게는 司法警察官의 職무를 집행하게 하고 있는 것임니다.

이와 아울러 이들 「팀」의 活動은 앞에서 밝힌 大 單位市場의 常駐監視員의 情報과 告發「센타」 등에서 들어 오는 告發狀況을 認知하여 기동성있게 「팀 員」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셋째, 이와같은 活動監視의 結果 犯法者(無許可또는 有害食品의 製造 및 販賣者와 같은 故意的이거나 質質的인 者)에 대하여는 司直當局에 告發措置하는 한편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따라 加重處罰을 단행하게 하고 있는 것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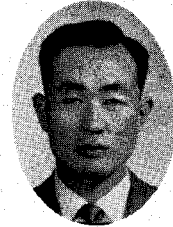
특히 無許可食品 및 有害食品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잊어서는 아니될 것을 添記하여 보면 어린새 싹의 殿堂인 學校周邊의 有害食品단속임니다. 即 학교주변에서 어린 새싹들이 값이싼 기초식품에 눈 을 돌리고 있음을 기화로 저렴하고 불량한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어린이 健康에 赤信號를 자 아 내게 함으로 학교주변에는 학교당국과 그리고 學 父母들의 협조로 계속감시와 단속으로 이런 부정 食品의 판매기회를 寸暇의 틈도 없겠끔 계속적인 감시를 행하고 있는 것임니다.

2. 製造加工業所의 整備임니다.

食品의 유통과정에 있어 당해 식품이 생산으로 부터 소비자 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 공급 되게 하기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식품이 생산되는 過程이 衛生的인 狀態下의 施設에서 그 식품 이 제조가공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와 반하는 製造 加工業所의 정비는 그 發生源을 제거하는 위생 적 관리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임니다.

따라서 現行法上 各業種別 施設基準을 향상규제 하여 이의 기준에 適合与否를 第一段階와 第2階 階로 구분하여 臨檢調査케 하고 있는 것임니다.

第1段階는 소정의 基準未達与否를 조사하여 상



〈필자〉

당기간 미달되는 시설을 보완 또는 改修할 것을 알리고 第2段階는 이의 改修 또는 補完与否를 확 認하여 미달되는 製造加工業所는 당해 營業의 許 可를 취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既히 第一段階措置는 各市道에서 거의 완료된 상 태에 있고 오는 7月1日부터 7月31日까지 1個 月間을 第二段階 施設調査에 착수하겠끔 하고 있 는 것임니다.

3. 標示基準에 定한 所定의 標示事項에 따라 徹底한 履行을 促求하는 것임니다.

流通過程에 있는 食品의 標示는 소비자 가 필요 食品을 선택하는 基本的인 要件이므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年중계속 감시를 강화하고 標示基準에 違背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保健社會部 訓諭에 定하는바에 따라 行政處分을 斷行 하고 있는 것임니다.

4. 取去檢査등의 科學化임니다.

流通過程에 있거나 또는 製造加工業所에 있는 食 品을 取去檢査함에 있어서는 보다 科學化한 방법 으로 수거를 행하고 또한 시·도의 衛生試驗所機 能을 최대한으로 증대할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食 品의 取去는 自己管轄內에서 제조가공되는 食品을 우선적으로 取去檢査케 함으로서 管轄許可食品이 他市道の 許可食品보다 質的인 保障을 받겠끔 하

도록하고 있는 반면, 取去의 목적으로 製造業所에 臨檢時에는 食品의 規格基準에 정한 안전한 包裝材料와 容器의 使用, 製品의 性状 및 유통 과정에서 變質, 腐敗되지 않도록 流通食品의 포장에 특별히 유의토록 지도를 할 것이며 食品의 검사시에는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정한 有害物質含有与否와 規格基準에 정한 試驗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검사결과 不適合으로 판정된 製品이 他許可機關의 許可製品으로 保健社會部에 報告를 택할 때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여 追회하거나 재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의하여 添言하자면 各市道가 행하는 食品營業許可中 製造品目許可를 받아야 할 營業을 당해 市道가 그 製造品目許可를 행하였을 때에는 그 尙狀(許可狀況)을 지체없이 保健社會部에 보고토록하여 全國의인 流通網을 통한 食品의 許可有無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違法·不當한 許可与否까지를 保健社會部에서 「체크」케하는등 事後管理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 食品製造業所의 自律的인 品質管理 透導策입니다.

製造加工業所가 행하는 自体製造加工의 工程이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現行食品衛生法 施行令을 改正公布하여 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할 營業의 種目을 보다 폭넓게 두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營業所의 施設基準에 自家試驗室을 구비하여야 할 業種도 그 폭을 넓혀 義務化하도록하여 自己製品의 品質을 自律的으로 保証하도록 하는등 自体管理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制度로서 제조시설이 自動化되어 있고 製品의 品質을 事前管理할 수 있는 要員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製造業所는 “優秀食品指定規程”에 의한 優秀食品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로서하여금 편리한 선택과 優良業所의 育成 및 營業者 상호간의 善

의 경쟁으로 시설향상과 自己品質의 保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食品衛生要員의 資質向上策입니다.

保健社會部에서는 既히 國立保健研究院에서 全國重要市이상의 地域에 근무하고 있는 食品衛生監視員에 대한 資質向上에 따른 教育을 완료한바 있었고 또한 全國 192個 保健所의 常駐食品衛生監視員에 대한 地域別 1日教育을 實施完了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方法으로 各市道는 적어도 年 2회에 걸친 自体教育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營業者에 대하여는 간담회, 또는 定期的인 모임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講習會등을 개최하여 營業者自身의 자질향상을 위한 衛生教育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接客業所施設管理와 食品調理管理의 向上策입니다.

既히 실시되고 있는 衛生等級制를 강력히 추진하고 法上 監視回數의 履行등으로 從業員個人衛生管理의 徹底와 接客業所에서 調理食品의 안전한 공급으로 營養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簡易飲食物 및 行商行爲에 對한 衛生管理策입니다.

첫째, 氷菓類 行商行爲에 대하여는 有許可製造業所에서 製造된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칸디», 「아이스크림», 「삭빙」등의 行商販賣에 한하여 許容하고 있으며 이의 行商販賣에 있어서는 당해 行商販賣對象製品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공급하는 製造業所가 일체의 衛生管理는 물론 그 판매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行商販賣의 과정에서 衛生上危害行爲

가 적발될 때에는 이를 공급하는 당해 製造業所를 依法措置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같은 措置 方案으로서의 申告節次에 따라 製造業所의 營業 主는 申告를 하게하고 이의 申告를 畢한者에게는 行商用통이나 손수레의 外表에다가 누구라도 용이 하게 볼 수 있는 곳에 行상행위의 標示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簡易飲食路店에 대한 措置입니다. 이의 조치내용을 소개하면 定着型簡易飲食店은 食品衛生法에 의한 簡易飲食店營業으로하여 許可對象業種으로 規制하고 소정의 許可基準에 합당하면 허가 조치하고 이에 미달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를 단행하여 간단없는 위생적인 지도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移動式簡易飲食路店은 “飲食物 行商行為申告要領”에 따라 신고처리하고 그 事後管理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조치는 現社会的/條件下에서 볼 때 대부분이 零細民을 대상으로, 零細民이 經營하는 業으로서 그 근절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業所에서 일어나는 식품위생상의 各種危害問題는 일시라도 방치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파생적인 지도가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9. 食品販賣業所의 衛生管理策입니다.

이는 71年度에 있어 처음으로 시도한 유통과정 에 있는 위생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食品工業의 現代化와 食品製造技術의 向上發達로 都市人口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製造加工 食品의 판매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적으로 製造된 許可製品이 유통과정을 통하여 消費者에게 위생적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서 제조가 공으로부터 消費에 이르기까지 名實共히 三位一體 式 衛生管理를 기함은 勿論, 食品衛生管理의 철저 를 보다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食品販賣店의 自体遵守事項制와 許可食品販賣店指定制 및 優良食品販賣店指定制로 구분하여 실시하 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食品販賣業所指定制는 그 실시 계획으 로서 우선 地域과 對象을 全國一円에 걸쳐 실시하 지 아니하고 그 판매의 빈도가 높은 地域에서만 실 시토록하고 있습니다.

실시지역은 全國市單位行政區域一円으로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비록 市가 아닌 地域이라 할지라도 人家의 密集또는 季節의으로 公衆이 多數集會 하므로서 市街地形態를 이루고 있는 地域이나 觀光地域등으로서 管轄郡守가 필요로 할 때에는 앞 에서 밝힌 바에 따라 이를 適用實施할 수 있게 하 고 있습니다.

그 對象으로서는

1. 各製造業所의 直売店, 代理店
2. 食品都売店
3. 食品專門販賣店

4. 食品取扱販賣雜貨店(구멍가게 포함)으로 하 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정을 받은 食品販賣業所는 당해 食品販賣店의 衛生點檢과 衛生管理에 있어 보다 철저한 諸般遵守事項의 履行与否등을 감안하여 許可 食品販賣店과 優良食品販賣店의 두갈래로 구분하 여 지정하고 주기적인 위생감사와 不正食品의 판 매금지등을 행하게하고 이와같은 사실을 소비자 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店頭에 指定店舖임을 표시하 는 表札을 달도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와같은 細部施策을 보다 강력하게 추 진되게 하기위하여 保健社會部에서는 정기적으로 는, 分期別로 市道の 食品衛生事業実績을 現地指 導確認하고 있는 것이며 市·道는 管轄保健所의 事業実績을 또한 定期的으로 巡廻指導를 하게 하고 있으며, 수시로 怠慢과 소홀로 민원의 對象이 되 는 경우와 突發의인 衛生上的 危害等 事故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도 아울러 講究推進하고 있 습니다.

